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230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3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성실수행’ 인정 등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내용 반영 및 기술임치 의무화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종평가 기준 정비(제25조 ③항)

- R&D사업에 ‘성실수행’을 인정함에 따라, 기술개발과정의 성실성을 검증하기 위해 ‘성실수행’ 및 ‘실패’ 기준의 명확화

나. 기술임치 의무화 개선(제28조 ⑧항)

- R&D 수행기업이 그 과제에 대해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등록한 경우 기술임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다. 기타 (안 부칙 제1~3조)

- “성실수행”으로 판정된 과제의 제30조(제재 등) 및 제31조(출연금 관리 및 환수)의 적용 조항 신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3년 이내에서 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전화 : 042-481-4400, Fax : 042-472-3289)

중소기업기술개발 운용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부 칙	부 칙
<u>신설</u>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성실수행”으로 판정된 과제의 제30조(제재 등) 및 제31조(출연금 관리 및 환수)의 적용은 동 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연 락 처	(042) 481 - 4400